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9.

발 의 자 : 박희승 · 윤준병 · 이원택
오세희 · 이춘석 · 김윤덕
백선희 · 소병훈 · 정준호
박해철 · 서영교 · 박홍배
임미애 · 윤후덕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,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음.

그러나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,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아울러 설문 결과 현행 유지보다는 구속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, 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일반적이지 않음.

이에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,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,

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(안 제92조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제2항 본문 중 “심급마다 2개월”을 “2개월”로, “2차에”를 “1심은 2차, 상소심은 3차에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,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피고인이 「형법」 제2편제1장·제2장의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
2. 피고인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
3.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
4.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
5. 주요 증거의 조사,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, 관련 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
6.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된 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92條(拘束期間과 更新) ① (생략)	第92條(拘束期間과 更新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<u>십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,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.</u>	②----- ----- -----2개월----- <u>1심은 2차, 상소심은 3차에</u>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</u>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</u> <u>십급마다 5차에</u>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<u>1. 피고인이 「형법」 제2편 제1장 · 제2장의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</u>
<u><신 설></u>	<u>2. 피고인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</u>
<u><신 설></u>	<u>3.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</u>
<u><신 설></u>	<u>4.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</u>
<u><신 설></u>	<u>5. 주요 증거의 조사, 피고인의</u>

<u><신 설></u> ③ (생 략)	<u>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 석,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 가 심리가 필요한 때</u> <u>6.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 여 재구속된 때</u>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